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6.

발 의 자 : 김성원·김정재·고동진  
김용태·유용원·박성훈  
박충권·김위상·정동만  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휘발유·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부과하면서,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,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,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.

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,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항).



법률 제 호

##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,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40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

